

[별표 2] <개정 2013.3.23>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

1. 2011년 4월 30일까지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
특급기술자	1)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4)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능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능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기능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p>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p>	<p>의 기능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p> <p>4)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p> <p>5)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p>
초급기능사	<p>1) 기능사자격을 가진 사람</p> <p>2)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p>	<p>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p> <p>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p> <p>3)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사람</p> <p>4) 해당 전문분야의 기능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p>

비고

가)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 제1호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나)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국내외에서 받은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다)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 제1호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2. 2011년 5월 1일 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 \ 구분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p>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p> <p>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p>	<p>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p> <p>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p>

	<p>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p>	<p>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p> <p>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자</p> <p>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자</p>
고급기술자	<p>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p> <p>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p>	<p>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p> <p>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p> <p>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p> <p>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p>
중급기술자	<p>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p> <p>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p>	<p>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p> <p>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p> <p>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9년 이상</p>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고급숙련기술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숙련기술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p>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p> <p>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p>	
초급숙련기술자	<p>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p> <p>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p>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비고

- 가)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 제2호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 나)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국내외에서 받은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 다)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 제2호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 라) 위 가) 및 나)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학력·경력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마) 2011년 5월 1일 전에 제1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는 제2호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및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술등급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바) 2011년 5월 1일 당시 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로서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등급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승급에 관하여는 제2호를 적용한다.
- 사) 2011년 5월 1일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기계제작, 정밀측정, 유체기계, 산업기계,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일반산업기계
차량, 철도차량	차량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조선
항공기계, 항공기관	항공
금속재료, 철야금, 비철야금, 금속가공, 표면처리	금속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설비
전기응용, 전자응용, 전기철도, 공업계측 제어, 전자계산기	전기전자응용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정보관리
공업화학, 고분자제품, 세라믹, 화학공장설계, 화학장치설비	화공
방사, 방직, 제포, 염색가공, 생사, 의류	섬유
지하자원개발, 지하자원처리	자원관리
토목구조, 건축구조	구조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탐사	토질·지질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지적
토목품질시험, 건축품질시험	품질시험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
식품, 농화학, 축산,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림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해양
공장관리, 품질관리	생산관리
포장, 제품디자인	포장·제품디자인
산업위생관리,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화약류관리	산업안전
소방설비	소방·방재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원자력·방사선관리

아) 2011년 5월 1일 당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 및 위 바)에 해당하는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2013년 1월 1일 이후

가.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 \ 구분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나.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 \ 구분	국가기술훈격자	학력자
고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 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 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 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 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 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1 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 무를 수행한 사람
---------	---	--

비고:

가)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 제2호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나)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국내외에서 받은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다)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 제2호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라) 위 가) 및 나)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학력·경력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마) 2013년 1월 1일 전에 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는 제3호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및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술등급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바) 2013년 1월 1일 당시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로서 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등급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승급에 관하여는 제3호를 적용한다.

사) 2013년 1월 1일 당시 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 및 위 바)에 해당하는 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